

관용표장

I. 의의

- (1)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 (2) 관용표장이라 함은 특정 상품에 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서 다년간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말한다.

II. 적용요건

1. 기본원칙

- (1)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

지정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깡'은 스낵과자에 대해서는 관용표장이지만 의류에 대해서는 임의선택표장으로서 등록 가능하다.

- (2)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판단

"정로환"은 지사제(위장약)의 관용표장이지만 예컨대 "동성정로환"은 '동성' 부분이 식별력이 있어 관용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으므로 등록 가능하다.

2. 판단기준

출원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의 거래실정에서 당해 상품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관용의 의미

관용이라 함은 다년간 계속적, 관습적으로 사용함을 말하고 여기에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III. 상표법상 취급

1. 상표권 설정등록 전

거절이유, 정보제공이유, 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

2. 상표권 설정등록 후

- (1) 상표등록 무효사유

관용표장이 착오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후 사후적으로 관용표장으로 된 경우 후발적 무효사유에 해당.

- (2) 상표권의 효력제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

IV. 관련문제

1.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적용여부

관용표장이 오랫동안 독점적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면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정법상 관용표장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의하여 등록 받을 수 없다.

2. 보통명칭과의 비교

보통명칭과 관용표장의 그 구별이 곤란한 경우(예컨대 : 나이론, 정종, 정로환 등)도 있지만, 양자는 표장의 구성요소, 인식의 범위, 발생의 태양 등에서 차이가 있다.